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81호 2019. 5. 31. (금)

【 조 례 】

- 정선군 조례 제2712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12
- 정선군 조례 제2713호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15
- 정선군 조례 제2714호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24
- 정선군 조례 제2715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9
- 정선군 조례 제2716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0

【 규 칙 】

- 정선군 규칙 제1314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4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53회 정선군의회(2019. 05. 14.)에서 의결된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12호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지방자치법」 제38조”로,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정선군의회”로,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윤리실천규범”으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35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제출”을 “자료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1, 별표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38조----- ----- 정선군의회 --- ----- 윤리실천규범--- ----- .</p>
<p>제2조(윤리강령) 의회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p>	<p>제2조(윤리강령)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별표 1 과 ----- ----- .</p>
<p>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9조(겸직금지)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p>
<p>제9조의2(겸직신고) <신 설></p>	<p>제9조의2(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
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
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 법 제35조제3항-----

 -----.

<삭 제>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
 -- 위해 -----
 ----- 자료 제출-----
 -----.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
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
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
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
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

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p><u>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u></p> <p><u>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u></p> <p><u>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u></p> <p><u>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u></p>
--	--

별표 1

정선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의 번영에 헌신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에 정선군 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군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 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며, 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주의회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모든 공사항위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별표 2

겸직 (변경)신고 관련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3. 영리행위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피의무의 위반 ○ 직무과 관련된 특위활동 금지 위반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공개사과, 출석정지</p>

[별지 제2호 서식]

정선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연 번	관계	성 명	생년월 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정선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의원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 제안이유

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 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지방의회마다 제각각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강화 (제9조의2)

-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겸직 신고대상 및 내용, 직무의 구체화, 수정된 겸직신고서 양식 도입, 겸직 신고기간 확보 및 안내 강화(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겸직 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겸직신고 내용 현행화 및 공개
- 법에서 열거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은 겸직신고 대상에 포함
 - * 영리, 비영리, 자영업 신고대상

나. 영리거래 금지의 적극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제15조, 제16조)

-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 강화
 - *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파악 및 관리(서식 마련):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 및 배우자 직계 준비속
- 공공단체 관련 시설·재산의 관리인 구체화 및 관리인 겸직 금지
 - * 공공단체 구체적 범위(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다.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제16조, 제17조)

- 법 위반시 겸직 사임 권고권 시행
 - * 조례에 관리인 겸직시 사임 권고 규정화
- 겸직신고 위반시 징계기준 설정 및 처리절차 상세화

제253회 정선군의회(2019. 05.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13호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의 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법인격을 가진 공익법인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조(재정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그 지급 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출연금을 재단에 지원한 때에는 군 지역진흥에 관한 사업에 한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출연금을 지원받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군 지역진흥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때
 - 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 나. 해당 사업의 중단
 - 다. 목적달성의 불가능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군수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환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재단에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가. 지역축제 · 관광홍보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정선군 홍보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재정지원(제3조)
 -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 나.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제4조)
- 다. 출연금의 지급(제5조)
- 라. 결산서 제출(제6조)
- 마. 지도 · 감독 (제7조)
- 바. 환수 등(제8조)

제253회 정선군의회(2019. 05.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14호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를 “정선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을 “「성별영향평가법」” 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한다.

제2조 중 “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하 “분석평가” 라 한다)란” 을 “ “성별영향평가”란” 으로, “분석평가하여” 를 “성별영향평가하여” 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 를 각각 “성별영향평가” 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 을 “(성별영향평가 대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의” 를 “성별영향평가의”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 시기)” 를 “(성별영향평가 시기)”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서 작성)” 을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서” 를 “성별영향평가서”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 결과반영)” 을 “(성별영향평가 결과반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노력하여야” 를 “노력해야” 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선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 2. 정선군 소관 정책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분석평가 제도”를 “성별영향평가 제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7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등)”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평가결”을 “성별영향평가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분석평”을 “성별영향평”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 제목,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제2호, 제9조제3항제4호, 제12조 제목 및 제13조 제목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

향평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u>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성별영향 분석평가법</u>」에 따라 정선군의 정책에 대한 <u>성별영향분석평가</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u>성별영향분석평가</u>"(이하 "<u>분석평가</u>"라 한다)란 정선군수(이하 "<u>군수</u>"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u>분석평가</u>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u>분석평가</u>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u>분석평가</u>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정선군 성별영향평가 조례</u></p> <p>제2조(정의) ---- 「<u>성별영향평가법</u>」----- ----- <u>성별영향평가</u> ----- ----- ----- ----- ----- ----- .</p> <p>제2조(정의) "<u>성별영향평가</u>"란 ---- ----- ----- ----- ----- <u>성별영향평가</u>하여 - ----- ----- .</p> <p>제3조(군수의 책무) ① ---- <u>성별영향평가</u>----- ----- ----- ----- .</p> <p>② ---- <u>성별영향평가</u>----- ----- ----- ----- .</p>

제4조(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 1. ~ 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분석평가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1. ~ 3. (생략)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

--성별영향평가법-----

----- 성별영향평가의 -----

----- 성별영향평가-----

제5조(성별영향평가 시기) -----

----- 성별영향평가-----

제6조(분석평가서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3. (생략)

제7조(분석평가 결과반영)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
----- 성별영향평가서-----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반영) --
성별영향평가-----

----- 노력해야 ----.

제7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선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 2. 정선군 소관 정책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신 설>

3. (생 략)

③ (생 략)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

1. (생 략)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 실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 성별영향평가 제도-----

성별영향평가-----
-----.

② -----
-----.

1. ----- 성별영향평-----
2. 성별영향평가결과-----
3. 제7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등) ①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1. (현행과 같음)

2. ----- 성별영향평가---

시 및 분석평가서 작성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4. (생략)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

6. (생략)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 군수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3. ----- 성별영향평가결

4. (현행과 같음)

5. ----- 성별영향평----

6. (현행과 같음)

7.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②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
성별영향평가-----
-----성
별영향평가-----.

②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
가 -----.

◇ 제안이유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명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를 “정선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로 함.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분석평가” 를 “성별영향평가” 로 함.

제253회 정선군의회(2019. 05.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15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출생신고일”을 “출생일”로 한다.

제4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형제·자매가 직업 및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양육비등 지원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월부터 지급한다.

1. 출생 또는 입양자: 지원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
2. 전입자: 지원기준일 이내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양육비등은 매월 나누어 균분하여 지급하되 매월 25일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지원기간은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첫째·둘째 자녀는 1세(생후 12개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셋째이상 자녀는 1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 ②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다만, 전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지원기준일”이란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녀의 <u>출생신고일</u> 또는 <u>입양신고일</u>을 말한다. 다만,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한 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p> <p>4.·5.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출생일</u> ----- -----.</p> <p>4.·5.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요건 및 대상) ① ~ ④ (생 략)</p> <p>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p> <p><u><단서 신설></u></p>	<p>제4조(지원요건 및 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p> <p><u>다만, 형제·자매가 직업 및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9조(지원신청·사실조사) ①양육비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은 지원 대상 자녀의 <u>출생신고</u> 또는 <u>전입신고</u>와 동시에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9조(지원신청·사실조사) ①양육비등 지원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u>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다만,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월부터 지급한다.</p> <p>1. 출생 또는 입양자: 지원기준일</p>

② (생 략)

제11조(지원규모 및 지급방법) ① (생 략)

②지원액은 분기별로 나누어 균분하여 지급하되, 매 분기 말에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 대신 지원액에 상당하는 육아용품 등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12조(지원기간 및 자격상실) ① 지원기간은 첫째·둘째 자녀는 출생신고일부터 1년, 셋째 자녀 이상은 지원기준일부터 만 12세까지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군 관내를 떠나 주소지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그 때부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자격상실자에게는 전출일이 속한 당해 분기 해당 지원액 중 그 분기중 실제 군 관내 거주기간을 산정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로부터 60일 이내

2. 전입자: 지원기준일 이내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규모 및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양육비등은 매월 나누어 균분하여 지급하되 매월 25일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기간 및 자격상실) ① 지원기간은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첫째·둘째 자녀는 1세(생후 12개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셋째이상 자녀는 1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②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단, 전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 제안이유

가. 「연간 100만원의 지원액을 분기별로 나누어 균분지급하던 것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육아기본수당등의 급여지급일인 매월25일로 지급일을 변경하여 수혜자가 느끼는 혜택 체감정도가 증가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며, 지급주기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하여 급여지급을 위한 지급 방식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형제·자매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다만, 형제·자매가 직업 및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5항)

나. 양육비 지원신청 기한규정 신설(제9조제1항)

다. 지원액은 매월로 나누어 균분 지급하되, 매월 25일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제11조제2항)

라. 지원기간은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첫째·둘째 자녀는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셋째이상 자녀는 1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함(제12조제1항)

마.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 전출한 경우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함. 단, 전출이 속한 날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함(제12조제2항)

바.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을 2019년 7월 1일 부터로 하며, 기존 대상자 및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53회 정선군의회(2019. 05.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16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000만원” 을 “2,000만원” 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상인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상인교육 이수자에게 사업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대상 등) ① (생 략)</p> <p>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 에게는 시설개선 사업의 50퍼센 트 범위에서 최고 <u>1,000만원</u>까 지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지원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2,000만원</u>----- -----.</p>
<p>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② (생 략)</p> <p><u><신 설></u></p>	<p>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군수는 상인 경영마인드 향 상을 위하여 상인교육 이수자에 게 사업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 제안이유

- 가. 관내 소상공인들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 나. 상인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상인교육 이수자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상권 회복 및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한도액 상향조정(제5조제2항)
 - 지원한도액(총사업비 50퍼센트 범위 이내) : 1,000만원 ⇨ 2,000만원
- 나.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우선지원 대상 조항 신설(제7조제3항)
 - 상인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상인교육 이수자에 대해 우선지원

제253회 정선군의회(2019. 05. 14.)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17호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9항제1호 중 “식대, 여비, 유류대” 를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단원이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한다.

-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는 단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이고, 유족의 순위와 배분 등은 상속에 따른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⑤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 서식][신설 . .]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_____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p>제출서류</p>	<p>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p>	<p>수수료 없음</p>
<p>담당공무원 확인사항</p>	<p>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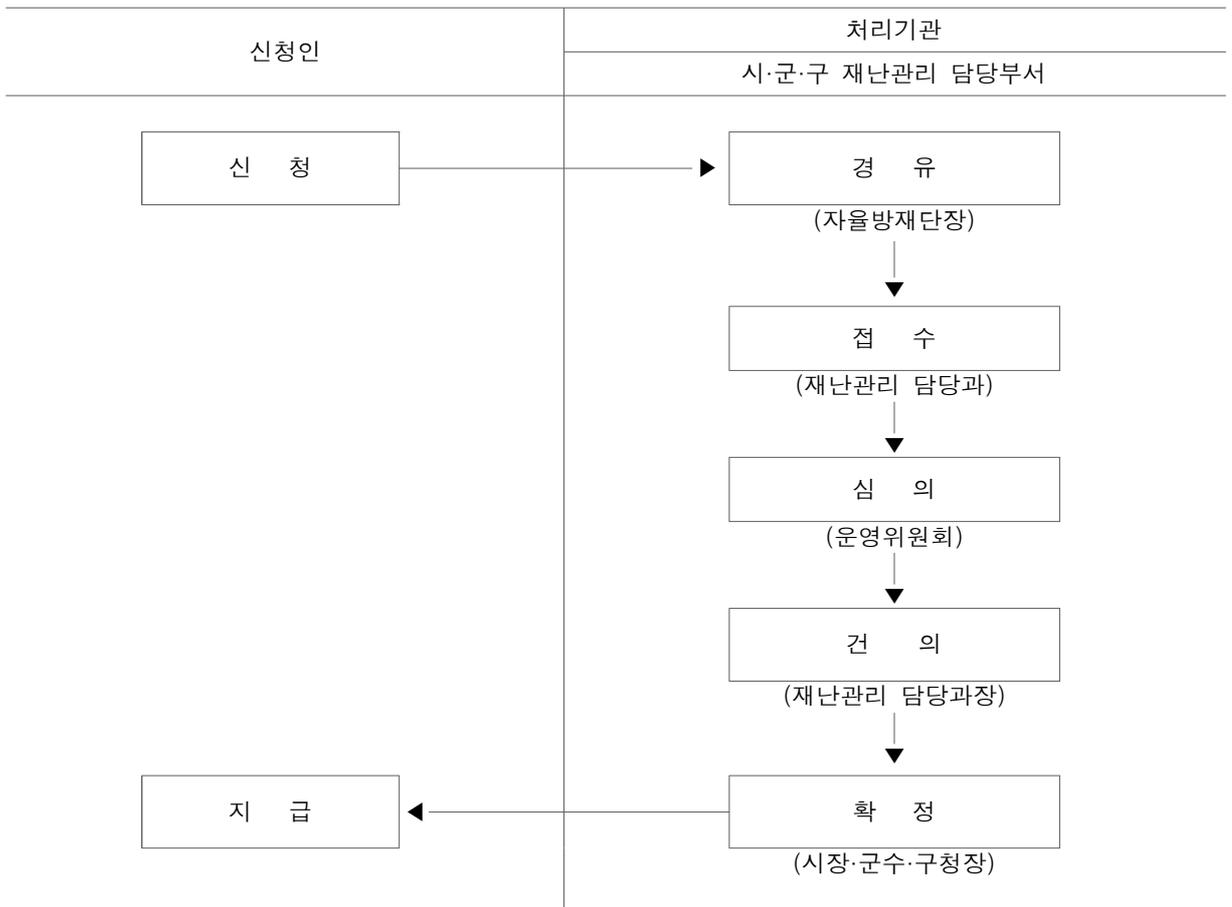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운영 등) ① ~ ⑧ (생략)</p> <p>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u>식대, 여비, 유류대</u> 등 필수 경비</p> <p>2. ~ 7. (생략)</p> <p>⑩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0조(운영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 ----- -----.</p> <p>1. ----- ----- 운 <u>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 사용료</u> --</p> <p>2. ~ 7. (현행과 같음)</p> <p>⑩ (현행과 같음)</p> <p>⑪ <u>제9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10조의2(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단원이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u></p>

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는 단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이고, 유족의 순위와 배분 등은 상속에 따른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조치 한다.

◇ 제안이유

- 가.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여비 규정 보완
 - ⇒ 자율방재단 재해보상 지급기준 마련에 따른 지급방법 및 절차 등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자율방재단 조례에서 여비를 실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지급기준이 없어 조례개정

◇ 주요내용

- 가. 자율방재단 여비 지급규정 표준화(제10조)
 - 지급하는 여비를 표준화 규정 신설(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나. 재해보상금 지급절차 신설(제10조2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7호서식)
 -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보상종류에 따라 청구 기간을 산정하고,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절차를 규정
- 다. 재해보상금 수령인 선정방법 신설(제10조2제3항 및 제4항)
 - 보상금을 수령 할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방안 등 규정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함

규 칙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14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 ③ 조례 제9조제1항의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 중 “분기별”을 “매월”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조(지원신청 등) ① (생략)</p> <p>②양육비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자녀의 부모가 되며, 지원기준일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양육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지원기준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정한다.</p> <p>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분기별 지원시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의 자격상실사유 발생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p>	<p>제3조(지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p> <p>③ 조례 제9조제1항의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p> <p>제6조(지원중단) ----- 매월 ----- ----- ----- -----.</p>

◇ 제안이유

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소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9조제1항 개정에 따른 소급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나. 조례 제11조제2항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 거주 확인 시기 변경(안 제6조)